

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1호 순천대 지정

- 순천대학교, 지정 기준 적합 ... 3년간 자격 유지
- 국내 저메탄 사료 보급 청신호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저메탄사료 보급 확대를 지원하게 될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제 1호로 순천대학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호흡대사 챔버*나 이동형 메탄 측정 장치**를 보유하고 메탄저감제 동물 사양 시험이 가능하다고 검증된 곳이다.

*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을 측정하는 호흡대사 측정 시설 (Respiration Chamber)

**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형 호흡대사 측정 장비(그린피드, GreenFeed)

국립축산과학원은 철저한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로 신청기관인 순천대학교가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했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정받은 제품을 말한다. 이를 배합사료에 첨가해 만든 저메탄사료는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환경친화적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해 판매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를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수입·판매업체는 해당 제품의 메탄저감 효과를 메탄저감제 실험 기관에 의뢰해 검증해야 한다. 또한, 검증

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제출해 심의를 통과해야 메탄저감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순천대학교 이상석 교수 연구팀은 반추 가축의 메탄가스 발생 저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이동형 메탄 측정 장치 2대를 보유하고 있어 한우, 젓소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되면 국립축산과학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며, 3년 동안 자격이 유지된다. 3년 후에는 재신청을 통해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을 원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87)로 신청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정현정 동물영양생리과장은 “이번 지정은 메탄저감제 보급을 준비하는 사료 회사와 저탄소 축산물 생산에 관심 있는 농가에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메탄저감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

2.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현장 실사 및 실험기관 지정 심의회(사진)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	책임자	과 장	정현정 (063-238-7450)
		담당자	연구사	김민지 (063-238-7469)

별표 3.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

1. 검정인력에 관한 요건

가.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검정에 필요한 검정책임자 1명, 품질보증책임자 1명 및 검정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때 책임자와 검정인력은 겸임할 수 없다.

나. 검정인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 검정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 관련 학과의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검정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3)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

다. 검정인력의 관련 학과·학부와 관련 종목·분야는 다음과 같다.

- 1) 관련 학과·학부: 농산제조학, 농화학, 동물자원학과, 미생물학, 바이러스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생물학, 생화학, 수산제조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과학, 식품영양학, 식품제조학, 식품화학, 유전공학, 축산가공학, 축산학, 화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 및 학부
- 2) 관련 종목·분야: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수의사, 식품기사, 식품기술사, 식품산업기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축산산업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종목 및 분야의 자격증

2. 시설에 관한 요건

가. 가축 메탄가스를 검정하는 기관은 반드시 호흡대사챔버 또는 그린피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각 실험기관은 호흡대사챔버 또는 그린피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별표 2에 따라 동물사양시험 시험조건 권고기준에 맞춰 시험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에 맞는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검정 수행 능력평가에 관한 요건

가. 메탄가스 검정능력 평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호흡대사챔버나 그린피드의 메탄가스 회수율 평가 결과서를 제출한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한 메탄가스 측정 결과와 시험 원자료(raw data)를 같이 제출한다.

나. 메탄가스 회수율 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메탄 검정 수행 능력 평가가 “미흡”일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